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05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강선영 · 임종득 · 이만희  
최보윤 · 최수진 · 조정훈  
신동욱 · 서지영 · 구자근  
박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76조의2 신설 등).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불을 진화하는 경우,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조종사의 승무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조종사의 편성에 대한 제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산불을 진화하는 경우,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에 제3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2.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를 함께 탑승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